



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의료기관 종사자(병원급 이상, 의원, 약국 등) 3차(부스터)접종 독려 요청

1.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에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.
2. 관련
 - 가.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-28587호(2021.10.26.) 「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 추가 접종 시행지침 및 접종대상 알림」
 - 나.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11~12월 시행계획(2021.10.28.)
 - 다.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-31032호(2021.11.16.) 「mRNA 백신 배정·유통체계 변경 관련 지자체 안내 및 협조 요청」
 - 라.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-31178호(2021.11.17.) 「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추가접종 관련 시행지침 추가 안내」
 - 마.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-31180호(2021.11.17.) 「의료기관 종사자(의원급 등) 추가 접종 시행 안내」
 - 바.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-31806호(2021.11.23.) 「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 추가접종 시행지침 안내(모더나)」
3.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3차(부스터)접종 대상자 중 2차 접종후 4개월(120일)이 경과하여 11월에 3차접종일이 도래한 대상군의 접종율이 병원급 이상은 43.7%, 의료기관 종사자(의원, 약국, 보건의료인 등)은 18.8%로 현재 저조한 상황입니다.
4.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, 관련협회는 회원기관의 해당 대상자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3차접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3차(부스터)접종 조속 시행을 위한 변경 내용 >

- 3차(부스터)접종의 조기접종**
 - (조기접종 가능 사유) 개인사정(해외출국, 질병치료 등), 단체접종(감염취약시설, 의료기관 등), 잔여백신 희망자 등
 - (접종간격) 접종대상군별 권장 접종간격 대비1개월 내 조기접종가능(☞하단 표 참조)
 - (예약방법) SNS 예약또는 의료기관 당일 방문 예약(12.2.(목)~)

대상군	권장 접종간	조기접종
-----	--------	------

	격	
60세 이상	4개월	3개월
감염취약시설 입소·종사자, 요양병원 입원·입소·종사자,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, 의료기관 종사자(의원 등), 18-59세 기저질환자		
18~59세 일반국민	5개월	4개월
우선접종직업군 (군·경·소방·보육·교육 종사자 등)		
양센 백신 접종자, 면역저하자	2개월	해당없음

□ **요일제 운영 한시적 해제 [12.1~12.31일]**

- (주요내용) 위탁의료기관은 11.29일 9시부터 예약정보 설정 자체 변경하여 요일제 한* 없이 운영·예약 가능**
 - * 기존에는 요일제 운영으로 최대 주3일까지 예약 가능일 설정 가능(11.15~), 자체접종만(대국민예약차단) 시행기관은 기시행중
 - ** 주 4일 이상 설정 가능, 잔여백신 등록 후 운영시간 변경 가능 등
- (예외기관) 11.15~21일(7일) 간 일평균 5건 이하 접종기관은 요일제 운영 유지(897개소)

□ **의사 1인당 예진 가능 인원 확대 안내**

- (주요내용) 신속한 3차(부스터)접종을 위해 자체접종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**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 인원을 한시적으로 확대**
 - 의료기관 **당일예약으로 자체접종하는 경우**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인원 제한 없음
 - 의료기관 예약등록 중 **당일예약, 당일등록시 적용, 미래예약 등록은 제외**
 - 기본접종(1·2차) 및 대국민접종은 예진 가능 인원 확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붙임. 1.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 추가접종 현황
 2. 의료기관 종사자(의원 등) 추가접종 현황. 끝.

